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8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이연희・박 정・박상혁

김정호 • 정성호 • 김남희

문금주 • 한민수 • 한준호

이춘석 • 허 영 • 허종식

윤종군 • 어기구 • 김윤덕

홍기원 • 박홍배 의원

(17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 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. 그러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.

현행법에는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 없어 조합임원이 정보공개 등 동법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

조치를 명할 수 있음.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'사업주체'에 해당하지 않고, 현행법은 '리모델링주택조합'만 감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'지역주택조합'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·감독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단계의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·감독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.

이에 주택조합사업의 자료 공개에 관한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·도지사가 자료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.

또한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·감독 대상을 '리모델링주택조합'에서 '모집주체 및 청산인을 포함한 주택조합'으로 확대함으로써 '리모델링주택조합'뿐만 아니라 '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'도 지도·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94조).

##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영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14조제2항 중 "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"를 "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경우"를 "경우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받은 경우"로 한다.

제94조 중 "리모델링주택조합"을 "주택조합(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의 청산인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8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    | 제12조(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     |
| 공개) ① ~ ⑤ (생 략)        | 공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| <u>⑥</u>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조합의 투명한 자료 공개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항은 시・도조례로 정한다.         |
| 제13조(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)     | 제13조(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)      |
|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| ①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| <b></b>                 |
| 1. ~ 7. (생 략)         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| 8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|
| ② ~ ④ (생 략)           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|
| 제14조(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)    | 제14조(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)     |
|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|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
| 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주택        | ②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주택조합의</u> | <u>주</u> 택조합의           |

####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<u>경</u> 우

#### 2. (생략)

제94조(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시·감독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·사용자 ·관리주체·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| 설립인가 또는 조합원 모집신   |
|-------------------|
| 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.   |
| 1                 |
| <u>경</u>          |
| 우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   |
| 리를 받은 경우          |
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94조(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|
| · 감독)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주택조합(모            |
| 집주체 및 주택조합의 청산인   |
| 을 포함한다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